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지점등기기록의 폐지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0.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3.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 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불임과 갱년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 (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붙임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재례]

1. 단순분할등기

가. 완전(소멸)분할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문과 b영업부문을 분할하여 乙(a)회사와 丙(b)회사를 설립하고 甲은 소멸하는 경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乙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1134
등록번호	110111-0001134
상 호	을 주식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16(명동1가)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1234
등록번호	110111-0001234
상 호	병 주식회사
본 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 해산 2025년 5월 10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16(명동1가) 을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병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나. 불완전(존속)분할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문과 b영업부문 중에서 a영업부문을 분할하여 乙(a) 회사를 설립하고 甲(b)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乙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2135
등록번호	110111-0002135
상 호	을 주식회사
본 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 2025년 5월 1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를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2. 분할합병등기

가. 완전(소멸)분할합병등기

(1) 흡수분할합병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분, b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과 丙(b)에 흡수합병하고 甲은 소멸하는 경우

○ 기존회사 乙의 변경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 주	.	.
		.	.
	400,000주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보통주식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
		.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 주 보통주식 300,000 주	금 1,500,000,000 원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 기존회사 丙의 변경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 주	.	.
		.	.
	400,000 주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보통주식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 주 보통주식 300,000 주	금 1,500,000,000 원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16(명동1가) 을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병 주식회사에 각 분할합병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2) 신설분할합병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분과 b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과 丙(b)에 합병하여 신설회사 丁(a)과 戊(b)를 설립하고 甲, 乙, 丙은 소멸하는 경우

○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丁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1124	
등록번호 110111-0001124	
상 호 정 주식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9길 60(서소문동)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p> <p>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19(명동1가) 을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p>	

○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戊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1135
등록번호	110111-0001135
상 호	무 주식회사
본 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중앙동1가) 병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하여 설립 2025년 01월 20일 등기</p>	

○ 분할되는 회사 甲 및 기존회사 乙과 丙에 관한 해산등기

기존회사 乙의 등기부

기타사항
<p>1. 회사분할합병 해산</p> <p>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9길 60(서소문동)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산</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p>

기존회사 丙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p>1. 회사분할합병 해산</p> <p>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산</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p>

분할되는 회사 甲의 등기부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16(명동1가) 을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병 주식회사에 각 분할합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9길 60(서소문동) 정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무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나. 불완전(존속)분할합병등기

(1) 흡수분할합병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문과 b영업부문 중에서 a영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에 흡수합병하고 甲(b)이 존속하는 경우

○ 기존회사 乙에 관한 변경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 주	.	.
		.	.
	400,000 주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 월 일 등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보통주식 —————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
		.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 주 보통주식 300,000 주	금 1,500,000,000 원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2025년 5월 1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에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2) 신설분할합병등기

분할되는 회사 甲의 a영업부문과 b영업부문 중에서 a영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과 신설합병하여 丙(a)을 설립하고 甲(b)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등기번호	0001357	
등록번호	110111-0001357	
상 호	병 주식회사
본 점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중앙동1가) 을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기존회사 乙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 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2025년 5월 1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3.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혼합된 경우

가. 완전(소멸)분할과 흡수분할합병의 혼합

분할되는 회사 甲(a, b c)이 분할하여 a영업부분은 분할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과 분할합병하고, b영업부분으로 분할신설회사 丙(b)을 설립하고, c영업부분으로는 분할신설회사 丁(c)을 설립한 후 甲은 소멸하는 경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에 관한 설립등기도 위 기록례와 같다.

○ 기존회사 乙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에 분할합병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29번길 6(인계동) 정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나. 완전(소멸)분할과 신설분할합병의 혼합

분할되는 회사 甲(a, b c)이 분할하여 a영업부분은 분할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a)과 분할합병하여 분할합병신설회사 丙을 설립하고, b영업부분으로 분할신설회사 丁(b)을 설립하고, c영업부분으로는 분할신설회사 戊(c)를 설립한 후 甲, 乙은 소멸하는 경우

○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중앙동1가) 을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丁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戊에 관한 설립등기

(주)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무에 관한 설립등기도 위 정에 대한 기록례와 같다.

○ 기존회사 乙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35(논현동) 정 주식회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29번길 6(인계동) 무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다. 불완전(존속)분할과 흡수분할합병의 혼합

분할되는 회사 甲(a, b, c)이 일부 분할하여 b영업부분은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b)과 분할합병하고, c영업부분으로는 분할신설회사 丙(c)을 설립하고, 甲(a)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기존회사 乙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되는 회사 甲에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2025년 5월 1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에
분할합병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29번길 6(인계동) 병 주식회사를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라. 불완전(존속)분할과 신설분할합병의 혼합

분할되는 회사 甲(a, b, c)이 일부 분할하여 b영업부분은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인
기존회사 乙(b)과 분할합병하여 분할합병신설회사 丙(b)을 설립하고, c영업부분으
로는 분할신설회사 丁(c)을 설립하고, 기존회사 乙은 소멸하고 甲(a)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丙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중앙동1가) 을 주식회사가 분할합병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丁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5년 05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 기존회사 乙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 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 분할되는 회사 甲 관한 변경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2025년 5월 10일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29번길 6(인계동) 정 주식회사를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4.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분할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은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닌 피분할회사가 직접 전부 취득하므로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완전분할이나 완전분할합병은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적분할의 기재례와 동일하다.

5. 분할, 분할합병무효판결 확정(축타등기)

가. 신설회사의 경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무효판결 확정 2025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00 분할무효판결 확정으로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나. 소멸회사의 경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해산 2025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갑 주식회사의 분할된 일부와 분할합병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 하고 해산 2025년 05월 10일 등기 동일폐쇄
1. 회사분할합병무효판결 확정 2025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000 분할무효판결의 확정으로 회복 2025년 05월 10일 등기

다. 존속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 월 일 등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보통주식 —————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 주 보통주식 ————— 300,000 주	금 1,500,000,000 원	2025. 05. 10 변경 2025. 05. 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보통주식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2025 05. 10 서울중앙지 방법원 2025 가합1000 분할무효 판결의 확정 2025. 05. 10 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합병~~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3 을 주식회사와 분할합병 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중앙동4가) 병 주식회사를 설립~~

~~2025년 05월 10일 등기~~

1. 회사분할합병무효판결 확정

2025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00 분할무효판결의 확정

2025년 05월 10일 등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p> <p>① (생 략)</p> <p>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u></p> <p>2. <u>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40px;">(1) <u>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u></p> <p style="padding-left: 40px;">(2) <u>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u></p>	<p>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u>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u></p> <p>2. <u>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40px;">(1)<u>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u></p> <p style="padding-left: 40px;">(2) <u>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u></p>

(3) 갑, 을, 병 회사의 관
할등기소가 모두 다
른 경우: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2.와
같다.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
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을 회사의 관할
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
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
하는 경우: 병 회사의 관할등기
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병 회
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가 모두 다른 경우: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
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
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
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
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
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
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
사는 소멸하는 경우: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
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
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
사의 관할등기소,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
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
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등기소
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
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
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
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
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
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
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
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
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
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
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
기소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
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

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③ (생략)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생략)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을 각하한 경우에도 접수등기소의 당해 등기사건은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738